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2. 2. 23 선고 2021가단113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고C

변론 종결2022. 2. 9.

판결 선고2022. 2. 23.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소외 D 사이에 2019. 3. 15.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원고는 D를 상대로 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38525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은 2016. 11. 29. "D는 원고에게 9,474,612원 및 그 중 3,691,964원에 대하여 2016. 1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는 2016. 12.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 관련 사항 등

- 1) D는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 2) 망인은 2019. 3. 6. 사망하였다. 망인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직계비속인 D, F, G이 있다.
- 3)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이 있었다. 망인이 사망한 후 피고와 D를 비롯한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9. 3. 15.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협의분할(이하 '이 사건 협의분할'이라 한다)을 하였다.
- 4) 위 협의분할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순창등기소 2019. 3. 20. 접수 제244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D의 재산 상태

D는 이 사건 협의분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었다. 대신 소극재산으로는 원고에 대한 양수금 채무, H에 대한 카드론 채무를 비롯하여 국세청, I,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전산정보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협의분할 이전에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이 발생한 상태였으므로,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그리고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 함은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적극재산이 감소하거나 소극재산이 증가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 있는 것이 심화되는 경우를 말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D가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협의분할을 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이 사건 협의분할 결과 D는 별다른 적극재산이 없어지게 되는 반면, 소극재산은 제1의 다. 항에서 살펴본 채무가 그대로 남게 된다).

다. 또한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D의 재정 상태(특히 H에 대한 카드론 채무의 경우 2005년에 발생하였고, 그 금액도 84만 원에 불과하나, 현재까지 변제를 못 하고 있다)를 고려할 때 D는 이 사건 협의분할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임을 알았다고 할 것이어서, D의 사해의사도 인정할 수 있다.

라. 결국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타당하다.

마.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와 채무자인 D가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지분에 관하여 체결한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앞으로 소유권을 표상하는 등기가 되어 있었거나 법률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가 진정한 등기명의를 회복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외에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어야 하는바, 이러한 법리는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취소 목적 부동산의 등기명의를 수익자로부터 채무자 앞으로 복귀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채권자는 사해행위의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채무자인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사해행위취소를 운운하는 원고의 일방적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협의분할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주장을 선의 항변으로 보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아무런 증거가 제출된 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원식

별지